

[별지 제4호의2서식] <신설 2021. 4. 5.> [시행일 : 2021. 7. 1.]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

임금보전방안 신고서

1. 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		
사업장 개요	사업장명		사업의 종류		
	대표자 성명		사업자등록번호		
	근로자수 명(남 : 명, 여: 명)		전화번호		
	소재지				
근로자 대 표	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 ☐ 별도 선출(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)				
	직위:		성명:		
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내용	서면 합의일	년 월 일			
	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작일	년 월 일			
임금보전방안 신고 내용	임금보전방안의 마련일	년 월 일			
	임금보전방안의 내용	☐ 임금 항목 조정 또는 신설 ☐ 적정수준의 가산임금 지급 ☐ 그 밖의 내용()			
	임금보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				
	임금보전방안의 마련 방법	☐ 단체협약 ☐ 취업규칙 ☐ 그 밖의 방법()			

「근로기준법」 제51조의2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 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